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3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정일영·조 국·한준호

박홍근 · 오세희 · 송기헌

허종식 · 민형배 · 박희승

한민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하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절약하여 남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로당에서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 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 2).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를 "다음 각 호의 운영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
- 2. 냉난방 비용
-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운영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경로당의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다른 운영비를 사용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명세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입비 등의 보조) ① -----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 -----다음 각 호의 곡관리법 | 에 따른 정부관리양 | 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신 설>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 입비 <신 설> 2. 냉난방 비용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삭 제>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 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 고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운영 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 우에는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경로당의 다른 운영 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운영비를 사용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명세서를
 보

 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